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4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한병도·신영대·조 국

김윤덕 • 이해식 • 장철민

진선미 • 윤준병 • 강유정

이소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 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되, 해당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궐위선거로 치러져 앞으로 대통령선거의 임기만료 선거일이 12월에서 3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하고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하여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배정시기를 조정함(안 제277조제1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 選擧"를 "해당 선거"로, "年度(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을 "연도(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으로,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2호"을 "선거일 전 60일(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2호"로, "경비는 당해 선거"를 "경비는 해당 선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77條(選擧管理經費) ①大統領	第277條(選擧管理經費) ①
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의 管理準	
備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各號	
에 해당하는 經費와 地方議會議	
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	
擧에 관한 事務중 統一的인 수	
행을 위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	
會 및 市・道選擧管理委員會가	
집행하는 經費는 國家가 부담한	
다. 이 경우 任期滿了에 의한 選	
擧에 있어서는 <u>당해 選擧</u> 의 選	<u>해당 선거</u>
擧期間開始日이 속하는 <u>年度(第</u>	<u>연도(제1</u>
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	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
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한 경비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
年度를 포함한다)의 本豫算에	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編成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	<u>선거</u>
<u>간개시일전 60일(제2호</u> 에 해당	<u>일 전 60일(제1호 중 선거의 관</u>
하는 <u>경비는 당해 선거</u> 의 선거	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일전 240일)까지 中央選擧管理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2호
委員會에 配定하여야 하며, 補	<u>경비는 해당 선거</u>
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事務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選擧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	
5日[第197條(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再選擧에 있어 서는 그 사유확정일부터 5日을, 延期된 選擧와 再投票에 있어서 는 늦어도 選舉日公告日前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까 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配定 하여야 한다.

- 1. ~ 7. (생략)
- ② ~ ⑤ (생 략)

	-
	-
	-
	_
	-
	-
1 - 7 (처체기 가이)	

- 1. ~ 7. (연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